2022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의 안 번 호 3211

제출년월일: 2022년 5월 25일 제 출 자: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가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제11조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, 수입계획상 예치금회수 금액이 당초 24,024백만원에서 39,088백만원으로 15,064백만원 증가하였음.
- 나. 이에 따라 지출계획상 신규사업 편성을 위해 사업비(정책사업)를 550백만원 증액하고, 여유자금 예치(재무활동)를 14,514백만원 증액하여,
- 다. 정책사업 2,600백만원, 재무활동 44,952백만원으로 각각 당초 편성 대비 20% 초과 변경하고자 함.
- 라. 수입·지출계획 변경 내용

〈수입 계획〉

(단위 : 백만원)

			1 - 0,
구 분	당 초 (편성 시)	변 경 (안)	증 감
계	32,498	47,562	15,064
부 담 금	7,796	7,796	
공 의 자 수 입	666	666	
그 외 수 입	12	12	
예치금회수	24,024	39,088	15,064

〈지출 계획〉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당 초 (편성 시)	변 경 (안)	증 감
계	32,498	47,562	15,064
비융자성사업비	2,050	2,600	550
(정 책 사 업)			(26.8%)
기금 관리비	10	10	
(행정운영경비)			_
여유자금 예치	30,438	44,952	14,514
(재 무 활 동)			(47.7%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균형발전정책과 균형발전정책팀 김소이 (☎2133-8614)